

우주산업 법제 동향

- 우주항공청 설치법 제정과 국내 우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관련 법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시작으로, 2005년 「우주개발 진흥법」, 그리고 「우주손해배상법」으로 이어지며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2024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우주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우주 및 항공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우주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향후 우주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 우주산업 관련 법률
2.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법체계 변화
3. 시사점

1. 주요 우주산업 관련 법률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항공우주산업법”)

항공우주산업법은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관련 법률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제3조),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 (제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4조 및 제15조)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1996년 4월에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1996 - 2015)」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후 1998년(독자위성의 개발시기 변경), 2000년(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개발 등), 2005년(위성개발일정 조정 등)에 걸쳐 3차례 수정되었습니다.

(2)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은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우주개발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제5조 내지 제7조),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지 제14조의3),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항(제15조 내지 제17조), 우주개발의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 (제18조 내지 제23조) 등입니다.

특히 이 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어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된 자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이는 우주산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10일 일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우주산업의 융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조 제8호, 제22조 및 제23조), 정부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포함하고, 공기업 및 연구기관의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5조 제2항 제9호의2 및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창업 촉진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6). 또한 국내 최초의 우주개발 관련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제18조의7).

(3)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우주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더욱 상세히 다루는 법률입니다. 동조는 인공우주물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물체를 발사한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배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한 등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우주손해배상법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 관련 핵심 사항들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법체계 변화

국가주도의 우주 개발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항공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우주정책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우주항공청은 기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우주 및 항공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담당하던 R&D, 정책, 산업, 교육 등의 분야를 총괄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제7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의 항공우주산업법 등 관련 법령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도 우주항공청 산하로 설립됩니다(제19조 내지 제21조).

두번째, 우주항공청은 기존 정부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채용 방식, 보수 체계, 근무 형태 등에 있어 기존 공무원 제도와는 다른 특례 조항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 직위의 20% 이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제8조),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합니다(제9조). 또한 우주항공청장에게는 조직 구성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세번째,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에는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됩니다. 청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 항목 간 전용을 할 수 있어(제16조), 급변하는 국제 협력 상황이나 연구개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주항공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제17조).

3. 시사점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조직의 변화를 넘어, 우주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30일자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지원 사업 및 우주펀드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인증제도 마련과 수출 지원, 제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각도의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규제 개선TF'와 '우주항공산업 수출지원TF' 운영을 통해 산업계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 진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방통위·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주산업TF를 신설하여 우주산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정한근

T. (+82) 2 6003 7781

고문

E. hkjung@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yi@yoonyang.com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